

동업기업 세액배분명세서

법인명(상호)	사업자등록번호	과세연도	. . . ~ . . .
---------	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각 계 사 업 연 도 수 득 산	① 결산서상 당기순손익		
	소득금액 조 정	② 익금산입	
		③ 손금산입	
	④ 차가감소득금액(①+②-③)		
	⑤ 기부금한도초과액		
	⑥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		
	⑦ 각사업연도 소득금액(④+⑤-⑥)		

과 계 세 표 준 산	⑧ 각사업연도 소득금액(⑧=⑦)	
	⑨ 이월결손금	
	⑩ 비과세소득	
	⑪ 소득공제	
	⑫ 과세표준(⑧-⑨-⑩-⑪)	
	⑬ 선박표준이익	

산 계 출 세 액 산	⑭ 과세표준 합계(⑫+⑬)	
	⑮ 세율	
	⑯ 산출세액	

배분대상 세액			
공제 · 감면세액	⑰ 공제세액		
	⑱ 감면세액		
	⑲ 계 (⑰+⑱)		
⑳ 원천징수세액			
㉑ 가산세액	㉑-1. 무신고 (4/100)		
	㉑-2. 과소신고 (2/100)		
	㉑-3. 원천징수불이행		
	㉑-4. 기타		
	계		
토 지 등 인 양 도 세 수 득 에 대 한 산	양도차익	㉒ 등기자산	
		㉓ 미등기자산	
	㉔ 비과세소득		
	㉕ 과세표준 (㉒+㉓-㉔)		
	㉖ 세율		
	㉗ 산출세액		
	㉘ 감면세액		
	㉙ 차감세액 (㉗-㉘)		
	㉚ 공제세액		
	㉛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(㉙-㉚)		

동업자별 배분세액									
동업자				배분세액					
㉜ 성명 (법인명)	㉝ 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㉞ 손익 배분비율	㉟ 동업자 군 ㊱ 동업자군 코드	공제 · 감면세액			㊲ 원천징수 세액	㊳ 가산 세액	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
				㊳ 공제 세액	㊴ 감면 세액	㊵ 계 (㊳+㊴)			
㊵ 계									

※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: 뒤쪽 참조

※ 구비서류

1.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82조제1항제4호부터 제56호까지 및 제60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(동업기업)과 관련된 서류[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신고서(별지 제107호서식(1))에 첨부한 서류는 제외합니다]
2.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61조제1항 각 호의 서식 중 해당 법인(동업기업)과 관련된 서류 [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신고서(별지 제107호서식(1))에 첨부한 서류는 제외합니다]

작성 방법

1. ①⑦ 공제세액란: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(갑)[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서식(갑)]의 ⑬③・⑩소계란의 각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2. ①⑧ 감면세액란: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(갑)[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서식(갑)]의 ⑫③・⑩소계란의 각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3. ②①가산세액란
 - 1: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25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.
 - 2: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25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.
 - 3: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25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.
 - 4: 가산세액계산서(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9호서식)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.
4. ③④ 손익배분비율란: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의 손익배분비율을 적습니다.
5. ③⑤ 동업자군란 및 ③⑥동업자군 코드란: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동업자군 및 동업자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.

동업자군 구분	거주자군	비거주자군	내국법인군	외국법인군
구분 코드	200	201	202	203

6. ③⑦ 공제세액・③⑧ 감면세액・④⑩ 원천징수세액・④① 가산세액・④②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액란: ①⑦ 공제세액란・①⑧ 감면세액・②⑩ 원천징수세액・②① 가산세액・③①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액란의 각 금액에 ③④ 손익배분비율란의 각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. 다만, ③①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액란은 해당 동업자가 내국법인군 또는 외국법인군에 속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.